

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283
------	------

2021. 4. 26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4월 1일, 성흠제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6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21. 4. 26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성흠제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우대)에 근거하여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
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관람료 감면)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,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포함코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립과학관 관람료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‘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’ 를 포함토록 함(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)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병역명문가 조례”)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“과학관”)의 관람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를 포함하고자 발의됨.

#### 나.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현황

-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‘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음.
- 서울시 또한 2015년 ‘병역명문가 조례’를 제정·시행하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음.
- “병역명문가”는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하며, 이 중 서울시민을 “예우대상자”로 규정하고 있음<sup>1)</sup>.

---

1)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병역명문가"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

- 병역명문가의 등록과 현황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에 따르면, 2020년 말 기준,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6,395가문(병역이행자 총 3만 2,379명)이며, 이 중 서울시에는 21.1%인 1,351가문(병역이행자 6,758명)이 거주하고 있음.

### < 서울시 병역명문가 현황 >

(단위: 가문/명, '20.12.31현재 )

구 분	계	'21년* (20. 3월~12월)	'20년	'19년	'18년	'17년	'16년~'04년
가문 수	1,351	153	187	157	138	82	634
병역이행자	6,758	766	917	793	712	445	3,125

- 병역명문가 조례 제5조에 따르면, 예우대상자에게는 서울시 기관·시설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나, 현재 세종문화회관(기획공연, 10% 할인) 한 곳에만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.

- 서울시와 시 교육청 소관 시설물 중 병역명문가에 대해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유료시설 관련 조례는 총 17건으로 파악됨<sup>2)</sup>.

친 가문으로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

2. "예우대상자"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"예우대상자 가족"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(성흥제의원)되었으며 유료시설은 서울동물원, 서울식물원, 시민청, 청소년시설, 도시건축전시관, 가족자연체험시설, 여성관련시설, 물재생

## 다. 과학관 관람료 감면(안 제6조제1항)

- 개정안은 노원구에 소재한 과학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추가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8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</u></p> <p>9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- 과학관의 관람료는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<sup>3)</sup>와 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에 따라, 성인 2천원, 청소년과 어린이 1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,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, 6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음(제6조제1항).

시설, 교육청 직속 체육시설 등임.

- 3)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관람료 및 이용료) ① (생략)  
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2017년 개관이후 관람객은 총 63만 6천명(수입 3억 5천 4백만원)이고, 이 중 무료 관람객은 21.3%인 13만 5천명에 이릅니다.

### <서울시립과학관 관람객 현황>

○ 관람객 현황과 수입						
(단위 : 원)						
구 분	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'21년(1월~3월)
관람객(명)	635,771	170,585	213,190	216,987	29,391	5,618
관람료 수입	354,266	107,197	113,530	106,327	20,511	6,701
운영일	1,027	203	312	311	141	60

  

○ 무료 관람객 현황						
(단위 : 명)						
구 분	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'21년(1월~3월)
합 계	135,356	54,295	33,719	39,166	6,823	1,353
유아	74,669	16,933	22,175	29,159	5,374	1,028
국민외교사절단						
공무수행 출입						
65세 이상	1,946			1,588	274	84
국가유공자	177			142	29	6
장애인	2,405	707	432	962	220	84
특별시명예시민증						
단체 인솔자	785			770	15	
시장이 인정한 자						
자원봉사	10,201	1,992	4,497	3,368	344	
기타 방문객	45,173	34,663	6,615	3,177	567	151

- 「대한민국 헌법」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(제39조), 「병역법」에서는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제82조).

- 일제강점, 6.25전쟁 등의 국가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경제 대국과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위하여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.
-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든 시민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, 존경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, 개정안은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이는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 준비 기간을 확보해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이번 회기에 미반영된 일부 유료시설(서울동물원, 서울식물원)과 시 산하기관 운영시설 등에도 개정안의 입법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이외에도 실질적인 보상과 대우 등의 혜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성흠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8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1일  
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제리, 김종무, 김태수,  
김평남, 김희걸, 박기열,  
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 
송명화, 송아량, 양민규,  
오현정, 이영실, 임종국,  
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  
최웅식, 황규복 의원(20  
명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5조(우대)에 근거하여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6조(관람료 감면)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코자 하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립과학관 관람료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'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'를 포함토록 함. (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병역법」,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8호의 호 번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8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(생략)</p>	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</p> <p>9.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1032400000004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성흠제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박주용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3.24

회신일 : 2021.03.24

내용문의 : 02-2180-7943

##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(관람료 감면) 제1항제8호 신설에 따라 세입 감소가 발생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함에 따라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병역명문가의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이용 실적을 취득하고 추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※ 서울지방병무청 등록 병역명문가 현황 파악은 가능하나 이들의 주소지가 서울시와 일치하지는 않음

< 서울지방병무청 등록 병역명문가 현황(2020.12.31. 현재) >

(단위 : 가문, 명)

구분	계	'21년	'20년	'19년	'18년	'17년	'16~'04년
가문수	1,351	153	187	157	138	82	634
병역이행자	6,758	766	917	793	712	445	3,125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예산분석관 박주용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